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보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 제한(안 제8조제1항)
- 나.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감액규정(안 제8조제2항)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감액규정(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로 한다.

제4조 중 “출장 또는 여행하는”을 “출장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내여행”을 “국내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2를”을 “별표 6을”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로,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월정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임

- 실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실군의회 <u>의원</u> 에 대하여 지급하는 <u>의정활동비</u>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u> ----- ----- -----.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u>출장</u> 또는 <u>여행</u> 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 ----- ----- <u>출장</u> <u>하는</u> ----- -----.
제5조(여비의 종류) ①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u>국내여행</u> 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 <u>국내출장</u> ----- ----- ----- ----- -----.
②외국에 <u>여행</u>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 <u>출장</u> ----- ----- ----- ----- -----.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u>별표 2</u> 를 적용하여 지급한	제7조(여비지급기준) ----- ----- -- <u>별표 6</u> 을 -----

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
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
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 설>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의정활동
비·월정수당 -----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
분의 취소가 -----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
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
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
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
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
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
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
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
법」 또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
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

<신 설>

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①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시기) 삭제

제3조(출석일수 계산) 삭제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출장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별표 6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 이외의 사항은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